

호외



2025. 11. 18.(화)

시보는 공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발행자 : 군 산 시 장

발행처 : 공보협력과 (☎454-2083)

**【회 보】**

군산시의회 공고 제2025-122호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1

회  
람

군 산 시

군산시의회 공고 제2025-122호

##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2항 및 「군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9조(공표 방법)에 따라 「군산시 장애인 평생직업교육 진흥 조례」 제정 청구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 군 산 시 의 회 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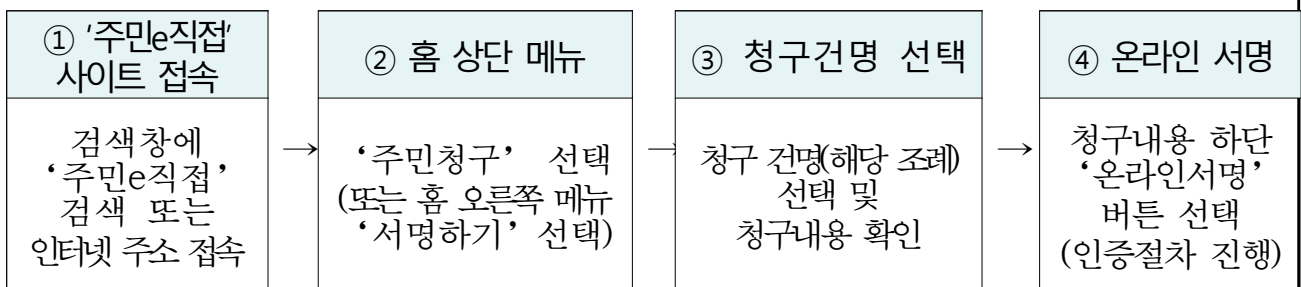
1. 청구 조례명 : 「군산시 장애인 평생직업교육 진흥 조례」의 제정 청구
2.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최유진 (군산시 축동로 42)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장애인의 직업역량 강화와 자립적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군산시가 장애인 평생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진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장애인의 직무개발·고용연계·사후관리 등 실질적 자립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4. 서명요청기간 : 공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2025. 11. 18.(화) ~ 2026. 2. 18.(수)다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의거 「공직선거

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5. 11. 18.(화)

6. 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서명취소) 방법

-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 : [www.juminegov.go.kr](http://www.juminegov.go.kr)(주민e직접)
- 전자서명 방법



- 전자서명 취소 방법

전자서명방법 ①~③ 절차 동일 진행(청구건명 선택) → 상단 처리상태정보 중 '전자서명 수' 선택 → 하단 '서명취소' 버튼 선택  
(단, 서명취소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에 청구인명부를 제출 또는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해야 함.)

7. 행정사항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산시의회 의회 사무국 시민봉사계(063-450-5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군산시 장애인 평생직업교육 진흥조례”

###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장애인의 직업역량 강화와 자립적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군산시가 장애인 평생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진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군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는 일반 학습권 보장 중심으로 운영되어, 장애인의 직무개발·고용연계·사후관리 등 실질적 자립 지원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 2,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의 취지를 구체화하여, 장애유형과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직업 중심의 평생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고, AI 기반 맞춤형 고용연계, 신 직무 개발, 산·학·복 협력체계 조성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장애인 평생직업교육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3조~제4조)

다. 협력위원회 구성, 임기, 위촉 해제 (안 제5조)

라.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성과관리 및 평가, 시민참여 마련 (안 제6조~제9조)

- 장애유형별, 직무별 맞춤형 평생직업교육과정 운영
- 산업계, 대학·기관 협력기반 연계 프로그램 운영
- AI 기반 직무적성 진단 및 고용연계 플랫폼 구축
- 취업 후 직무적용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교육시설과 학습 인프라의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평생직업교육 관련 정책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평생직업교육 진흥계획)**

① 시장은 5년마다 군산시 장애인 평생직업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장애인 평생직업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2. 직무개발 및 고용연계 활성화 방안
- 3. 교육기관·복지기관·산업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 4. AI 기반 고용연계시스템 구축 계획
- 5. 사업성과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방안
- 6. 혼합형(원격·대면) 직무학습 플랫폼 구축
- 7. 디지털 접근성 보조기기 및 학습지원 인프라 구축

**제5조(군산시 장애인 평생직업교육협력위원회)**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직업교육 정책의 자문 및 협력·조정을 위하여 군산시 장애인 평생직업교육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직무개발 및 고용연계 정책에 관한 사항
- 기관 간 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평생직업교육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안

③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시의원, 관련 공무원, 교육전문가, 장애인단체 대표, 산업계·복지기관·대학 관계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중에는 반드시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인단체 추천 인사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 평생 직업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때 소속기관의 인사이동·퇴직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할 때 질병, 장기 결석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의 운영을 현저히 방해한 때

⑥ 그 밖에 위원의 위촉, 해촉,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한다.

1. 장애유형별·직무별 맞춤형 평생직업교육과정 운영
2. 산업계·대학·기관 협력 기반 직무개발 및 인턴연계 프로그램 운영
3. AI 기반 직무적성 진단 및 고용연계 플랫폼 구축
4. 취업 후 직무적용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5. 우수 교육기관 및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 평생직업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제8조(성과관리 및 평가)**

-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직업교육사업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 ② 평가는 직무연계성과, 자립도, 교육참여율, 고용전환지표(KPI) 등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 ③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진흥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시는 우수성과를 거둔 기관 또는 개인을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민의 참여)**

장애인과 그 가족, 시민이 교육과정 기획·운영·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 ① AI 기반 직무·고용 연계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 처리 제한)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민감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접근통제, 보안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